

●고용노동부령 제28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0항제7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을 “국제연합(UN)”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G20회의”를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8호 중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회의”로 한다.

제6조의3제7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지원

제27조제5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별표 5 중 총계 “561”을 “568”로 하고, 일반직 계 “555”를 “562”로 하며, 행정사무관 “110”을 “111”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1”을 “4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을 “21”로, 통계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3”을 “34”로, 통계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80”을 “587”로 하고, 일반직 계 “574”를 “581”로 하며, 행정사무관 “130”을 “131”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1”을 “4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1”을 “22”로, 통계주사 “3”을 “4”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7”을 “38”로, 통계주사보 “5”를 “6”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6,326”을 “6,512”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248”을 “6,434”로 하며, 일반직 계 “6,248”을 “6,434”로 하고, 행정주사 “1,009”를 “1,03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91”을 “201”로, 행정주사보 “1,142”를 “1,174”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361”을 “38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51”을 “267”로, 행정서기 “382”를 “404”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573”을 “601”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12”를 “841”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6,308”을 “6,494”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230”을 “6,416”으로 하며, 일반직 계 “6,230”을 “6,416”으로 하고, 행정주사 “849”를 “87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89”를 “199”로, 행정주사보 “1,041”을 “1,07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361”을 “38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

주사보 “254”를 “270”으로, 행정서기 “480”을 “502”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573”을 “601”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12”를 “841”로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 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통합고용정책국 공정채용기반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명 (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산업안전감독	1명 (5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유해화학물질 관리(지방고용노동관서)	9명 (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100명 (8급 30명, 9급 7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452명 (6급 136명, 7급 226명, 8급 9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3명 (6급 34명, 7급 57명, 8급 22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5)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40명 (7급 10명, 8급 15명, 9급 15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85명 (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9)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21명, 7급 32명, 8급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0)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6급 10명, 7급 16명, 8급 7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직 및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노동시장 조사·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관련 정책 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청년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5명(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사업체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1명(6급 31명, 7급 48명, 8급 2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558호, 2020. 3.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직업능력정책국 및 근로감독정책단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8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